



## 1.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로 건강상태 확인하기

-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하여 의심증상 및 등교중지로 확인시 담임교사 연락하기

## 2. 개인위생수칙 철저히

- 마스크 착용: 입과 코 가리기, 가급적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및 여분 마스크 준비
- 손씻기: 30초 비누로, 기침예절: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3. 거리두기 준수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및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 피하기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4. 새로운 등교기준 안내

### 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 등교 기준(보건소 통보)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sup>①</sup>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sup>②</sup>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sup>②</sup>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sup>③</sup>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등교 가능

### 나. 등교 전/후 방역수칙 안내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체크하기 1. 코로나19 의심증상 2. 본인 및 동거인 코로나19 검사 3. 본인 및 동거인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여부 4. 동거인 중 확진자(재택치료) 여부	코로나19 <b>의심증상</b> 으로 ‘ <b>등교 중지</b> ’인 경우 담임교사 연락 및 <b>진료·검사</b> <b>→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b> <b>→ 의심증상 지속시 적극적으로 병원진료 및 선별진료소, 의            료기관, 가정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lt;음성&gt; 등교 가능</b> (병원진료확인/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문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시 보호자 확인서 등)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 진단검사실 시한 경우(선제검사제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등교 후	등교시 증양현관 (열화상)	본관 1층 증양현관으로 전교생 등교
	수업활동 중 발열(37.5도 이상)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등) 발견 시	37.5°C 이상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 보호자 동행하에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토록 안내
	마스크 착용	평상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방역기관에 의한 격리 이후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 94 또는 동급) 착용

## 5. 학교 확진자 발생 :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후속조치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접촉자 범위: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 등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1차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선제검사 키트 활용	
그 외 접촉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현장 이동형 PCR : 학생 교직원 전용 PCR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 ▶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

- ▶ 선별진료소 · 지정의료기관 - 음성확인서
- ▶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시
  - 1, 2차 검사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 3차 검사결과는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1,2,3차 모두 작성한 상태)

2022. 3. 2.

정읍남초등학교장